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07
----------	-------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의자 : 구자근 · 김선교 · 최영희

이종배 · 권명호 · 김석기

김예지 · 정동만 · 김승수

김학용 · 전봉민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과태료)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p> <p>① ~ ⑦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1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p><u>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중소기</u></p> <p><u>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u></p> <p><u>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u></p> <p><u>다.</u></p>
<p><u>&lt;신 설&gt;</u></p>	<p><u>제33조(과태료) 제20조제8항을 위</u></p> <p><u>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u></p> <p><u>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u></p> <p><u>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u></p> <p><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